

새터민 학생 지원규정

□ 제정 : 2017.01.01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수원대학교(이하 ‘본교’ 라 한다)에 재학 중인 새터민 학생의 교수·학습지원과 시설·설비 등을 지원하여 고등교육 기회 확대는 물론 만족스러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, 나아가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‘새터민 학생’이란 북한에 주소, 직계가족, 배우자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. (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1호)

제3조(조직) 새터민 학생의 지원을 위하여 학생지원처에 지원업무 담당자를 둘 수 있다.

제4조(새터민 학생 지원업무) 다음 각 항의 지원업무를 수행한다.

- ① 새터민 학생의 학습, 생활, 상담, 시설 등의 지원 및 복지에 관한 사항
- ② 새터민 학생의 도우미 및 자원봉사자의 관리·운영에 관한 사항
- ③ 새터민 학생 지원정책의 기본 방향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
- ④ 새터민 학생 지원을 위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
- ⑤ 기타 새터민 학생에 대한 지원에 관련된 사항

제5조(새터민 학생지원위원회 구성 및 기능) 새터민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위원회는 학생지원처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며, 위원회는 학생생활지도위원회에서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심의·결정한다.

- ① 새터민 학생 지원정책의 기본 방향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
- ② 새터민 학생의 학습, 생활, 상담, 시설 등의 지원 및 복지에 관한 사항
- ③ 새터민 학생의 도우미 및 자원봉사자의 관리·운영에 관한 사항
- ④ 새터민 학생 지원 규정의 제·개정에 관한 사항
- ⑤ 기타 새터민 학생에 대한 지원에 관련된 사항

제6조(새터민 학생에 대한 이해증진) ① 본교는 새터민 학생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구성원이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새터민 이해교육과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.

② 새터민 학생을 이해하기 위하여 지역의 유관기관 및 협의체와 네트워크를 구성하여, 자원봉사 활동 등 재학생들의 참여를 지원할 수 있다.

③ 그 밖에 새터민 학생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7조(새터민 학생 지원업무 담당자 교육) 본교는 새터민 학생의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담당자의 새터민 학생에 대한 이해증진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제8조(동아리 등의 지원) ① 본교는 새터민 학생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동아리나 교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② 본교는 새터민 학생들의 상부상조하기 위한 동아리의 구성 및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③ 그 밖에 새터민 학생들의 불편 및 개선사항은 학생지원처의 회의 심의를 거쳐 반영 하도록 한다.

제9조(장학금 지급) 새터민 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,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장학금 관련 규정에 따른다.

제10조(평가)① 새터민 학생 지원 및 서비스에 대한 불만요인과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년 1회 설문 조사를 실시한다.
② 설문조사 결과 나타난 문제점은 새터민 지원 및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향상 및 정책 추진을 위한 근거자료로 이용하며, 개선을 위한 구체적 개선방안으로 연계 되도록 환류체계를 강화한다.
③ 평가 및 설문조사는 학생지원처의 평가지침에 의하여 실시한다.

제11조(시행세칙)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제정 규정은 2017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.

(경과조치) 이 규정 제정으로 종전의 새터민 학생 지원 규정은 시행된 것으로 본다.